「한국지방행정학보」 제5권 제2호(2008. 12): 83-96

형사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를 중심으로-

Suggestions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riminal Arbitration System

- Focused on the Northern Gyeonggi-provincial Support Center for Crime Victims -

김 환 철 (경민대학 자치행정과 교수・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 운영위원)

Abstract

Houn-Chul Kim

Some suggestions on the support center for crime victims and the status of the criminal arbitration committee are discussed in this study. Insufficiency of resources and finances which is an internal limit at the initial stage of enforcemen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easily solved. However, some proposal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special legislation for criminal arbitration is needed. Secondly, strengthening support system of the government is needed. Lastly,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nd sharing information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are needed.

If the methodology of supporting victims and of criminal arbitration is established, it can be the foundation for realizing a constitutional, welfare state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nations.

주제어 : 경기북부,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인권, 조정위원

Key Words :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province, criminal arbitration system, support center for crime victims, human rights, arbitration committee

Ⅰ. 서 론

현대사회를 규정하고, 미래사회를 예측하는 다양한 패러다임(paradigm)의 외형은 정보화나 고령화, 세계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변화는 인간주의화, 자연친화, 인권의 존중화 등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2004년 11월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2006년 3월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작은 시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적절한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며,[1] 내용적으로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에 치중하여 오던 전통적인 형사사법관과는 다소 배치되는 듯한 활동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영승, 2006: 8). 이에 근거하여 그 동안 2003년 9월 김천・구미 지역의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설치를 시작으로, 2005년 1월 경기북부범죄피해자센타 등 전국 검찰청 관할구역 단위로 55개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6년 04월 검찰 내부의 형사조정 관련업무의 세부절차로서 「범죄피해자지원센타 형사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규정하여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타가 그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조정의 업무가 범죄피해자센타의 주요업무가 되고있다.(송길용, 2007: 57)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결국 정책의 수요자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혜를 받을지는 보다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실제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더불어 형사조정의 업무의 보완 필요성이 시행 초기에서 점검해야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경기북부피해자지원센타(이하 '경기북부지원센타'라 함)를 중심으로 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활성화방안을 형사조정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

Ⅱ. 범죄피해자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1. 피해자 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로마니신(J. M. Romanyshyn)은 사회복지가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

1) 이와 관련한 중앙언론의 자료는 다들 우호적이며, 반기는 분위기이다.(동아일보 06년 4월 25일자, KBS 8아침뉴스 4월 28일, SBS 라디오 06년 5월 16일 등, 서울지방검찰청,『보호와 지원』참조)

개발과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하여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omanyshyn, 1971: 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지원의 업무가 자선이라는 행정행위를 벗어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개인적인 차원의 접근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역사회 및 국가적 시각에서 재해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를 지역사회나 국가적 시각에서 재해석 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지역사회 및 국가 간의 상호 작용하는 방법론적 접근이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 테두리 내외에서 피해자 인권 및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단순한 접근에서 이제는 사회 전체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총체적 접근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 1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온 이후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법무부의 대책이 최근의 법제정 혹은 개정을 통하여 제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와 제도화에 입각하여 범죄피해자를 바라 보았을 때,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며,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Lewis와 Lewis(1977, 13))의 지역사회 모형을 고찰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경험적(experiential)프로그램과 환경적(environmental)프로그램의 구분이다. 경험적 프로그램이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환경적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수행되는 제반 사항들이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운동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기준은 광역적인 프로그램과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개인 삶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는 것이며, 후자는 개인의 삶에 보다 집중적으로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수행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차명호, 2006: 20)

① 광역적 경험적 프로그램 :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경험 제공

② 집중적 경험적 프로그램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집단에 경험 제공

---

2)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형사재판상 화해제도 도입, ②공익적 민간법인 형태의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의 지원 및 육성, ③피해자구조기금 설립에 의하여 피해자구조제도 확대, ④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⑤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 예방 및 사생활 침해 방지, ⑥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에의 피해자의 참여 확대 등이다.

③ 광역적 환경적 프로그램 : 전체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의 요구에 반응
④ 집중적 환경적 프로그램 : 특수개인이나 집단의 환경에 적극 개입

<표 1>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

구 분	광 역 적	집 중 적
경험적	- 범죄피해 및 위기개입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 및 또래상담, 피해자 자조모임, 신변보호 운영
환경적	- 피해자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피해자보상의 연구,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 조력기관과 피해자 연계, 법률자문, 피해자 대변, 화해와 중재

출처 : 차명호, 2006: 21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 지원센타의 경우는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광역적 업무와 집중적 업무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필요성

전술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 친인척, 이웃 등이 위로하거나 인적·경제적 부조를 함으로서 피해자지원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되지 못하였고, 형사사법으로 범죄자를 처벌·교화하는 일을 중요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라는 전통적 사회의 붕괴와 익명성을 요구하는 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가 방치되고 심지어 형사사법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만을 위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니며 범죄 피해의 고통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범죄피해는 그 속성상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입장에서는 경제적·정신적 아노미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사 기관 등에서 조사대상으로 전락함은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한 자구노력이 쉽지 않는 상태이다. 심할 경우 가정이 파괴되고 범인처벌과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직장생활도 유지할 수 없어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곤궁에 빠지는 등 생활자체가 어려운 2차적인 피해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지원센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은 범인의 인권만 강조하여 국가의 비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고 범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숙식과 치료까지 해주는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곤궁은 불행한 일인 뿐 개인의 문제임으로 스스로 해결하라며 방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국민이 국가에 의해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조차 보장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도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정법의 한계나 국가재정상의 한계 및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간의 범죄피해지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구본원, 31)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서야 피해자 학회가 창립되고 성 폭력 또는 가정 폭력 범죄 피해자나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며, 2003년 9월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 지청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를 창립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검찰청의 지원 하에 각 지역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타가 설립되는 과정에 있으며, 최근 들어서 지원센타에 형사조정의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그 역할이 주목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절을 달리 하여 현황을 분석하여 본다.[3]

Ⅲ. 형사조정의 현황과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2005년부터 경기북부지원센타를 중심으로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을 2006년 검찰 내부의 관련 지침 수립 후 표준모델에 따라 시범시행을 거쳐 2007년 전국 33개 검찰청과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 하에 시행에 들어갔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조정지침'을 간략히 고찰하며, 경기북부지원센타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다.

1.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형사사건의 조정의뢰 및 그 사건처리 등을 규정한 검찰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의 '목적'과 '형사조정 대상사건' 규정을 종합하면, 형사조정이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4] 이러한 형사조정은 각 국가와 지역마다 그

3) 2007년도 2억 6,000만원이 형사조정위원수당으로 지원.
4) 위 지침 제1조 '목적'에 의하면,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사적자치 영역에서의 해결능력을 증대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사인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형사조정은 근린사법적 형사조정과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조정을 모두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피해복구와 지역사회의 평화,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와 대화, 조정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형사조정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송길룡, 56) 현재 시행실무는 검찰에서 형사조정 대상 사건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로 송부된다.[5]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이 이제 출발점이라는 단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된「국가의 범죄 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활동 촉진 및 이를 위한 피해자의 손실 복구 지원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정의)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함은 범죄 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상응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손실복구를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형사 화해·중재는 형사조정 또는 형사화해를 뜻하는 비법률적 표현이라 해석되어진다(송길룡, 77).

검찰의「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은 39개 조항, 8개 서식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은 42개 조항, 12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조정 시행방안은 위 각 지침을 형사조정 대상사건 선별부터 조정절차 진행, 조정절차 종결 후 사건처리에 이르기까지 요약・정리한 것이다.

3. 경기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타의 역할과 방향성

경기북부지원센타의 형사조정과 관련된 현재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웃소싱의 문제

형사조정은 지역사회 조정위원의 참여하에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히 종국적으로

5) 다만, 대상사건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및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사건으로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고 있다.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토록 하는 하나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형사조정 자체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으로 형사사법의 외연 확대이며 지금까지 국가기관만이 전담해 온 분쟁의 해결과 피해복구에 지역사회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형사사법의 아웃소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웃소싱의 기준의 문제이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경우 특별한 아웃소싱의 기준이 없이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형사조정의 실적 면에서는 나름대로 탁월한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그 피드백 차원에서 그 구성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형사조정위원회의 인적자원 분석

총계	변호사	교수	교육계 (전직교장)	상담소장	세무사 법무사	부동산 노무사	의사	전직 공무원	기타
33 (인)	4	5	5	7	2	2	1	2	5
구성비 (%)	12	15	15	21	6	6	3	6	15

구성원의 분포는 11개조 33인이 총원이며, 비율상 상담소장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교수와 변호사 순이다. 비교적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구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건의 실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부족하며 항상 조정에 임할 수 있는 조장 요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정의 성격상 조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향후 변호사와 교수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6)]

2) 인근 자치단체와의 관계성

범죄피해자지원 및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조정의 활성화에 따라 앞으로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연 조정위원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구하였지만, 실질적인 지원실적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근 자치단체 주민의 입장에서 지원받은 실적과 자치단체 지원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표 3>, <표 4>, <표

6) 특히 조정의 성격상 임금체불 등이 현실적으로 많아 노무사 등의 인력 보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과 같다.

경기북부지원센타의 이사장이 경기북부의 자치단체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였지만, 지원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업무의 속성상 각 자치단체의 주민이 본 지원센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제도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원센타의 경우 역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북부지원센타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하여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김혜수씨나 이재룡씨 등을 섭외한 것은 매우 우수한 홍보수단을 확보한 거라 판단되어지며, 타 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로 전파할 수도 있는 좋은 사례라 판단되어 진다.

또한 향후 홍보관련 예산증가와 매체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표 3> 인근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실적

(천원, 2007년 10월 기준)

시, 군별	계획	실적
계	110,000	38,000
의정부시	20,000	15,000
양 주 시	20,000	0
남양주시	20,000	10,000
구 리 시	10,000	0
포 천 시	20,000	10,000
동두천시	5,000	3,000
연 천 군	5,000	0
가 평 군	5,000	0
철 원 군	5,000	0

<표 4> 인근 자치단체주민별 상담지원 실적

(건수, 2007년 10월 기준)

구 분	계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철원	타시도
계	893	201	89	112	60	84	86	12	46	56	147
상반기	553	136	51	68	48	51	44	8	26	38	83
3분기	340	65	38	44	12	33	42	4	20	18	64

<표 5> 홍보 관련 매체의 분석

(천원, 2007년 10월 기준)

구 분	행사	방송보도	신문보도	타기관 홍보물	책자발간	홍보물발간	기타
계	0	5	38	15,000	1,000	400	4
상반기	0	5	38	15,000	1,000	400	4
7월	0	0	6	200	0	5	0
8월	0	0	5	200	0	5	0

<표 6>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 홍보대사

성 명	직 업	사 유
김 혜 수	배우 겸 탤런트	이미지 홍보 및 피해자지원 사업홍보
이 재 룡	배우 겸 탤런트	〃
윤 정 희	배우 겸 탤런트	〃

7) 형사조정업무의 확대와 대응

경기북부지원센타의 경우에는 타 업무에 비하여 형사조정의 업무가 매우 많아지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업무의 급증은 센타 본연의 업무 추진이 어려울 만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의 본연의 사업을 위해서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조정이 일부 필요하다. 상담원을 채용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조정을 위한 위

원의 확대 개편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의 업무실적

(건수, 2007년 10월 기준)

구 분	계	법률구조	법정동행	형사조정	의료지원	민원안내	형사절차 안내	기타
계	893	202	27	124	2	219	257	62
상반기	553	123	17	84	2	148	137	42
3분기	340	79	10	40	0	71	120	20

4. 경기북부지원센타의 기대효과

형사조정의 기대효과는 시행초기에 판단할 수 없지만, 경기북부지원센타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효율적 형사사법시스템 구현이다. 형사조정은 민사사건의 형사분쟁화 등 소송으로 치닫는 각종 분쟁을 민간의 사적자치 영역에서 소송외적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분쟁해결능력을 증대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와 사회가 가지는 분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분쟁해결시스템을 다원화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지만, 형사조정업무가 시행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재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정된 수사 및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일정 지역사회의 수사기관 및 법원 등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사건이 증가한다하여 무한정 인력을 증원할 수도 없기에 형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경기북부범죄지원센타의 경우 그 성공률이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70%를 상회함으로써, 효율적 활용이 되었다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효율성이다. 형사조정제도는 과다한 소송비용의 지출 감소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적 명예추락, 정신적 충격 등 개인적 피해의 조기 구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분쟁성 사건을 지역사회의 개입으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질시와 반목, 법적 투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를 조정과 화해를 통한 통합이라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될 수 있으며, 사건 이전에 미리 당사자간에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7]

---

7) 특히 형사조정의 내용 중 경기북부지원센타의 경우 임금과 관련한 건수가 가장 많고,

Ⅳ. 형사조정의 발전방안

1. 형사조정의 별도 입법화

현재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조정이 활성화되고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형사조정이 20세기에 정립된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이는 UN과 EU 등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의 송길룡 검찰연구관의 경우 형사조정의 입법 체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법 형태를 주장하는 경우가 우리사회에서는 보다 타당한 입법형태라 하며,(송길룡, 89), 형사조정 담당기관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등록과 국가기관에 의한 감독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정과 구체적 법체계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법학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2. 정부의 지원체계 강화

우리나라에서 형사조정은 아직 검찰과 법원, 변호사, 법학계 등 법조계에서도 아직 생소한 개념이어서, 고객의 입장인 조정당사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당장 조정위원에 대한 최소한 실비 지급과 형사조정제도의 홍보에 지원이 있어야 한다.

3. 조정위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형사조정위원은 사실상 형사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이다. 형사조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전제되는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민간조정 보다 더 섬세하고 치밀해야 한다. 향후 조정위원의 선별기준과 조정위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조정능력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등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우수 사례나 상담·조정기법 등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한정되어 있는 지역사회 자원의 사정을 감안한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성공건수가 높아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더욱 그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민간기관과 연계 필요성

범죄피해의 문제는 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안고 는 전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원센터의 독자성보다는 기존의 유사기관들과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기구가 경쟁적으로 설립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기존단체와의 연계는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기관과의 교류 및 연계를 통하여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많은 피해자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범죄 피해의 유형에 따라 성 폭력, 가정 폭력이나 청소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정신과 의사의 심리 상담과는 별도로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조직을 소개하여 주는 것이 범죄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관련 민간 지원 단체와 자조조직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들 단체나 조직과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계체제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대학 등이 주요한 연계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관 홍보의 필요성

범죄피해자지원이나 형사조정의 이념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의도한대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기북부지원센타의 경우처럼 연예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유효한 수단일 수 있지만, 다양한 홍보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인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8)]

6. 조정의 이행력 확보 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포괄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정결과에 집행력 등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형사조정이 민사조정과 달리 다양한 합의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 간에 금전배상이 주를 이루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피해자 운영 사업체에서의 봉사, 특정 활동의 금지 등 금전배상이 아닌

8) 인근자치단체의 홈페이지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내용을 조정사항으로 담을 수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내용의 합의가 형사조정의 본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당시 조정에 의뢰된 것은 조정 성립 사항 불이행시 혐의규명 필요여부에 따라 재수사 또는 조정성립과 이행에 따른 감경처분 등으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관련 교수들과 법률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범죄피해자지원센타의 업무와 형사조정위원회의 현황 등을 경기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상담실적만을 고려하면 경기북부지원센타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행초기의 내재적 한계인 자원 및 재정의 부족 문제 등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시행초기에 있는 형사조정과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요약하여 6가지 안을 제시해 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조정의 별도 입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의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조정위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공유 등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기관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관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의 이행력 확보 문제를 제기하였다.

범죄피해자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이 더욱 행복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조력하는 복지·인권프로그램이며,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일이 많다. 피해자의 학문적 성격 규명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형사조정의 문제 등은 향후 법률가들의 몫일 것이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런 일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해야 하고, 사회전반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형사조정의 경우 그 기대효과가 매우 높다.

연구자는 행정학자로서 제도의 틀과 방향성을 분석하였을 뿐, 실제적인 일은 향후 법률가들과 법학과 교수들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며, 이러한 제도의 실행은 결국 법치사회의 준법정신 강화로 연결될 것이다.

피해자지원과 형사조정 등의 방법론을 통하여 범죄가 줄어들고 나 아닌 타인과 공존하는 정신이 강화된다면, 국가의 종국목표인 법치국가, 복지국가의 실현의 기초가 될 거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대신한다.

<참고문헌>

김용세・박광섭・도중진. (2002). 「형사화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 (2006). 「범죄피해자 보호의 영역에서 '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의미에 관한 고찰」. 「법조」.

구본원. (2006). 범죄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활동방안.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 의정부검찰청・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 「보호와 지원」.

소성규. (2006). 범죄피해자 보호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범죄피해자 지원활성화 방안」.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

송길룡. (2007).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 매뉴얼」.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오영근. (2007). 피해자지원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운영 활성화 워크샵 자료집」. 의정부지방검찰청・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타.

인천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타. (2006). 「추진사업 및 지원활동 사례」.

차명호. (2006).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러다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창원지방검찰청・경남서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타. (2006).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사례집」, 1집.

최영승. (2006). 범죄피해자 발굴 및 지원대책.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타.

Daniel McGillis. (1997). *Community Mediation Programs: Developments and Challenges*. U.S. Department of Justice.

Amber Hardin. (2004). *The State of Community Medi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Community Mediation

Romanyshyn. J. M.. (1971). *Social Walfare*. N.Y: Random House

Lewis & Lewis. (1997). *Community Counselign: A Human Services Approach*. New York.

접수일(2008년 09월 21일)
수정일자(2008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27일)